

「고흥군 문화의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2 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2년 9월 6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1. 제안이유

- 고흥군의 ‘문화의 날’ 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과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기본계획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(안 제3조~제4조)
-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운영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(제5조~제6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 (제7조)

3. 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9. 6. ~ 2022. 9. 13.(8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6065, 팩스 : 061-8305595

- 붙임 1.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 1부.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고흥군 문화의 날) 이 조례에서 “고흥군 문화의 날”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계획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고흥군 성별·연령·지역·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

2.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

3. 그 밖에 고흥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고흥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,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고흥군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.

③ 고흥군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·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) 군수는 고흥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군수가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
2.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
3. 군수가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
4. 고흥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
5.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

제5조(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) 군수는 군수가 설치·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고흥군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공연법」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
2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
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4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

제6조(사무위탁) 군수는 고흥군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고흥군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및 개인에게 「고흥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관계 법령 발췌서

□ 「문화기본법」

제12조(문화행사)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,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<개정 2016. 5. 29.>

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[제목개정 2016. 5. 29.]

□ 「문화기본법 시행령」

제8조(문화의 날 행사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.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공연·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

2.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0. 11.>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<신설 2016. 10. 11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. <신설 2016. 10. 11.>

1.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·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
2.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
3.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
4.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
5.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